

조 사 보 고 서

- 보조금법 위반단체 특별점검 -

2021.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

I 조사배경 및 목적

- 최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문예진흥기금 관리주체로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점검으로 보조금 누수 방지
- 제보에 대한 혐의사실 조사를 통해 공공재정환수법 및 보조금법 등 위반을 확인하고, 보조금 환수 등 적법한 조치

II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1. 11. 8.(월) ~ 11. 19.(금)
 - * 보조사업자 대면조사(추가) : 2021. 12. 9.(목)
- 조사반 : 감사실장 ○○○, 대리 ○○○ 2명
 - 공공재정환수 전담TF 2명(○○○ 차장, ○○○ 차장) 조사 참여
- 조사방법 : 실지조사
- 조사중점
 - 보조사업자 선정의 타당성 및 보조사업 선정절차의 합리성
 - 보조사업자의 거짓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교부 여부
 - 보조금 교부목적외 사용 및 사적사용, 횡령 등 여부

Ⅲ 조사 결과

가. 조사결과(총괄)

□ (주)◇◇◇◇ (대표 ○○○○) / 담당부서 : ◆◆◆

-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확인되어 (주)◇◇◇◇ 대표 ○○○○ 외 실질적 운영자로 파악된 □□□ 대표 ▲▲▲도 경찰에 고발조치 요구

□ ▼▼▼ (대표 ■■■■) / 담당부서 : ◆◆◆

- 피신고자와의 신병확보가 어려워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 요구

□ ★★ (대표 ●●●) / 담당부서 : \$\$\$

- 보조금 정산과정에 있어 거짓정산보고가 의심되어 「보조금법」에 저촉되는 부정수급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별도 감사사안으로 확대 점검 예정

□ &&& (대표 ※※※) / 담당부서 : \$\$\$

- 단체의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제한 요건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별도 감사사안으로 확대 점검 예정

나. 처분요구 : 4건

계	수사의뢰	고발	회수	통보
4건 (3명 / 41,454,472원)	1건 (1명)	1건 (2명)	2건 (41,454,472원)	2건 (1건)

※ 회수금액은 검·경조사 및 사법처분에 따라 변동 가능

[별 첨]

1. 처분요구서
2. 증거자료 목록(증거자료 별첨)

[붙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고 발 · 통 보

제 목 보조금(문예기금) 교부 목적외 사용 및 부당 편취
피 고 발 인 피고발인1. (주)◇◇◇◇ 대표 ○○○(*****-*****)
피고발인2. □□□ 관장 ▲▲▲(*****-*****)
고 발 건 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문서 위조
고 발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발인1. ○○○는 (주)◇◇◇◇ 대표자로서, 고발인으로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으로 수행되는 ‘신나는 예술여행사업(이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 받은 보조사업자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발인2. ▲▲▲는 □□□1), @@@2), %%%3)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로서, 피고발인1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에게서 보조금 교부받은 2021년도 공모사업에 기획자 역할로 참여한 자이며, 본 사건 다수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상 (주)◇◇◇◇의 실제 주인은 ○○○가 아닌 ▲▲▲ □□□ 관장이라고 상당히 의심된다.

1) □□□ 소재지 : CCCCC

2) @@@ 소재지 : DDDDD

3) %%% 소재지 : DDDDD

2. 사건에 대한 법령 및 규정

피고발인1(◇◇◇◇ 대표), 피고발인2(□□□ 관장)에 지급한 문예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의 공공재원(기금)이며, 피고발인1,2에게 지급한 재원의 지급성격은 보조금으로서 「보조금법」에 의거하여 문예위는 ‘중앙관서의장’의 지위에 있고 피고발인1,2는 보조사업자 지위이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에 따라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중앙관서의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또는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문예위는 피고인1,2와 같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전 「보조금법」 등 준수 의무를 공지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보조금 교부조건 동의서’를 통해 ‘관련 법령과 규정, 지침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어길 시 관련 법령과 규정, 지침에 따라 보조금 반환 및 향후 지원제한 등 일체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동의 서명 후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피고발인1,2도 피고발인의 보조사업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시 보조금법 등 관련법령과 규정, 지침을 준수할 것에 동의를 하였다.

한편 문예기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6조, 제8조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으로

4) 관련법령 및 규정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예술인복지법」,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

보조사업자 등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청구자격이 없는데도 청구하거나’, ‘과다청구’ 등 ‘부정청구등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하거나, 범죄혐의가 상당한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하여야 한다.

3. 피고발인들의 혐의내용

피고발인1 ○○○는 (주)◇◇◇의 대표자로 문예위로부터 ‘2021년도 신나는예술여행사업’ 등 보조사업에 선정, 수행을 위하여 문예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였다.

한편 피고발인2 ▲▲▲도 사단법인 □□□ 회장(대표)으로 문예위의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다수의 보조금을 직접 또는 (사)★★★★를 경위하여 교부받았다.

[표1] (주)◇◇◇ 및 □□□ 보조금 교부내역

연도	공모사업명	신청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액(원)
2020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공간긴급지원 2차)	전시공간 긴급지원사업	(주)◇◇◇	3,000,000
2021년	신나는 예술여행 (아동청소년)	○○○○	(주)◇◇◇	52,000,000
2019년	(사)★★★★ 인력지원사업(큐레이터)	전문인력지원 (큐레이터)	(사)★★★★ (2차 보조자 : □□□)	7,887,100
2019년	(사)★★★★ 인력지원사업(에듀케이터)	전문인력지원 (에듀케이터)	(사)★★★★ (2차 보조자 : □□□)	15,600,000
2020년	(사)★★★★ 인력지원사업(에듀케이터)	전문인력지원 (에듀케이터)	(사)★★★★ (2차 보조자 : □□□)	7,810,000

5)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표1] (주)◇◇◇◇ 및 □□□ 보조금 교부내역

연도	공모사업명	신청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액(원)
2021년	(사)★★★★ 인력지원사업(에듀케이터)	전문인력지원 (에듀케이터)	(사)★★★★ (2차 보조자 : □□□)	13,050,000
2020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공간 긴급지원)	전시공간 긴급지원사업	□□□	3,000,000
2021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민간)	연수단원지원	□□□	18,300,000

그런데 2021.9.3. 피고발인1,2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BBBBBB 등 다수의 기관들로부터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공익신고가 제보되어 조사결과, 피고인1,2의 범법행위가 아래와 같이 혐의가 있다.

①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위반 : 거짓신청으로 보조금 교부

고발인1,2는 문예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면서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상 (주)◇◇◇◇의 실제 주인(대표)은 □□□ 대표 ▲▲▲로 ○○○에게 공모사업 신청서 또는 사업기획서 등을 써서 전달하고, 보조사업에 선정되면 이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 ▲▲▲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고 보조금 집행 시 사례비를 ▲▲▲ 외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지급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문예위 공모사업에 처음부터 거짓 신청을 하여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문예위의 공정해야할 심의업무를 방해하여 고발인1,2가 선정되어 지원 신청한 다른 신청인이 탈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발인1,2는 문예위의 보조사업 신청 및 교부시 보조금수령자(***, ^^ 등 다수인)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참여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가 참여자들과 공모·회유하여 처음부터 되돌려 줄 요량으로 하고 문예위에 제출하였다.

문예위가 (주)◇◇◇에 보조금을 지급한 교부조건은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참여자들에게 정당한 업무의 대가를 지급토록 한 것인데, ▲▲▲가 □□□, @@@, %%%, (주)◇◇◇ 소속직원을 동원하여 마치 참여인력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청구하여 문예위를 속이고, 사례비를 다시 되돌려 받아 보조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하였다.

② 자격없는 자의 보조금 부당 착취(횡령) 및 교부 목적외 사용

문예위 감사실 조사를 통해 신고자등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정황으로 볼 때, 피고발인2 ▲▲▲가 실질적인 (주)◇◇◇을 운영을 한 주인(대표)으로 판단된다.

▲▲▲는 다른 사업체인 □□□ 대표인데, 신고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 정황을 통해 피고발인1 ○○○가 교부받은 보조사업의 실제적인 기획·운영·관리자로 확인되며, ▲▲▲는 고발인의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자(보조금수령자)들의 개인통장을 사전에 소유·관리하면서 보조금이 각 개인들에게 사례비 등으로 입금되면 ▲▲▲ 또는 □□□ 직원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신고자(2명)에게서 편취한 금액은 총 4,521,060원이며, 신고자 외 사례비를 지급받은 다른 참여자 8명 중에서도 동일수법의 거래가 있는 사실(참여자명 : AAA), □□□ 소속인력이 문예위의 다른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를 보조받고 있는 자가 (주)◇◇◇ 보조사업의 참여자로 사례비를 받고 있는 점, 더욱이 ▲▲▲가 문예위 감사실과의 조사에서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진술을 번복하고 신고자(2명) 외에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참여자(AAA) 거래내역에서도 동일수법이 발견되어 ▲▲▲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판단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주)◇◇◇이 ‘2021년

신나는 예술여행(아동청소년)-○○○○'으로 지출한 참여자 사례비 총 36,904,192원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된 지출액)은 거짓·허위청구이고, 해당금원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가 불법으로 편취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는 □□□ 대표이며, ◎◎◎는 (주)◇◇◇ 대표로서 문예위의 보조금은 (주)◇◇◇에 교부한 것인데, 문예위가 (주)◇◇◇에 민간위탁한 보조사업에 ▲▲▲가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수법으로 보조금 갈취한 것이며, ▲▲▲는 문예위의 조사에서 편취한 보조금을 □□□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해당보조금을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적으로 착복 또는 횡령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사업관련자(직원등)의 개인계좌를 이용한 부당한 보조금 편취

한편 신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 BBBBBB, CCCCC, DDDDD 등 다른 지자체 지원사업에서도 보조금을 착복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문예위의 보조사업에서 착복한 금액이 입금된 □□□의 법인계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처를 알 수 없는 입출금내역이 다수 확인되며,

신고자(***, ^^) 및 별도 확보한 AAA(□□□과 ◇◇◇ 직원)의 개인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해당통장을 ▲▲▲가 직접 소유하면서 각종 보조사업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입출금 거래내역이 다수 보이는 등 ▲▲▲는 소속직원 명의의 개인계좌 또는 여러 개의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문예위 외 다수의 보조사업에서 지원금을 편취·착복한 것으로 상당한 혐의가 있다.

④ (주)◇◇◇과 □□□ 등 부당 내부거래 등 혐의

피고발인2 ▲▲▲는 @@@, □□□, %%% 3곳 사업체의 대표이며, 신고자들의 주장 및 다수의 증거 등 정황으로 볼 때 (주)◇◇◇의 실소유주라고 보이고, (주)◇◇◇은 별도의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가 국가 등 보조사업에 선정되면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장비 같은 필요물품 등의 발주를 (주)◇◇◇에 하는 방식으로 내부거래를 통해 보조금을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주)◇◇◇의 실제 주인일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진술과 정황으로 볼 때 ▲▲▲가 국가 및 지자체 등의 각종 보조금 등 지원사업을 따오면, ▲▲▲가 실제 주인이며 관리 하에 있는 (주)◇◇◇을 통해 납품 등 매출을 일으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발인1,2의 일련의 행위는 「보조금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을 위배한 것이고, ▲▲▲는 (주)◇◇◇의 실질적인 주인이면서 별도 법인인 (주)◇◇◇을 경위하여 □□□ 또는 ▲▲▲가 보조금을 착복 및 횡령을 한 것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 BBBB 등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사용에 있어 「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 상 사기 등 범죄 혐의가 상당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 ①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가 있는 보조사업자 (주)◇◇◇(대표 : ◎◎◎), □□□(대표 : ▲▲▲)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시고, [고발]
- ②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정되면 부정수금액 회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 등 행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 사 요 청

수사 대상자 성명 : ■■■■ (*****-*****)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주소 :

협 의 건 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0조 위반

협 의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위 사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을 보조금으로 하여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을 준수하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법」 제22조(용도 외 사용)는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3조(보조금의 반환) 1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혐의내용

① 가공인물을 통한 거짓·허위로 보조금 부당 편취

그런데 위 사람은 문예위의 ‘2015년 (추경)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지원사업-주민자치센터순회사업(이하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사업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가공인물 1명(FFF)을 보조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무대스텝’으로 참여한 것처럼 교부신청서에 적시하고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가공인물에게 지급하여 문예기금(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가공인물 ‘FFF’은 보조사업과 관련한 순회 공연 전 공연준비를 진행해 주었고, 공연 시작 이후에는 다른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여 보조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사람은 FFF이 참여한 것처럼 하고 FFF에게 사례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허위정산을 하여 [표1]과 같이 총 2,475,520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다.

[표1] 가공인물을 통한 보조금 편취 내역

년도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지급자	지급일자	지급액
2015년	(추경) 소외계층문화 순회사업	■■■■의 ‘○○○’- 연극 ‘○○○’	FFF	2015.11.19	309,440
				2015.11.19	309,440
				2015.11.24	619,880
				2015.11.30	619,880
				2015.12.08	615,880
합 계					2,474,520

②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된 공연 사례비(보조금) 편취 및 허위 청구

또한 위 사람은 문예위로 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공연(행사)에 출연한 출연자 7명에게서 동일한 비밀번호로 등록한 출연진들의 개인통장(₩₩₩)과 각 출연진들의 도장을 요구하고 받아, 실제로는 출연자들에게 사례비의 일부 금액만을 출연자의 다른 계좌에 지급하였고, 보조금 정산보고서에는

출연진들에게서 받은 각 개인별 ₩₩₩ 통장에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여 마치 출연진들에게 사례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였다. 한편 신고자 외 정상적으로 사례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다른 출연자들도 위와 같이 동일한 ₩₩₩ 계좌로 사례비가 이체되고 있는 점, 위 사람이 출연자들에게 ₩₩₩ 계좌를 만들게 하고 도장을 소유하였다는 신고자의 주장으로 볼 때 다른 출연자들에게서도 보조금이 편취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

[표2] 보조사업 출연자에 지급한 사례비(인건비) 지급내역

고용인	급여일	급여	개인 급여총액	실제 급여일	실제급여	개인별 실급여 총액	편취액
GGG (조명감독)	2015.11.19	309,940	2,475,520	상세내역 알 수 없으나 적게 지급		1,746,000	729,520
	2015.11.19	309,940					
	2015.11.24	619,880					
	2015.11.30	619,880					
	2015.12.08	615,880					
HHH (무대감독)	2015.11.19	309,940	2,475,520	정상지급(추정)		2,475,520	-
	2015.11.19	309,940					
	2015.11.24	619,880					
	2015.11.30	619,880					
	2015.12.08	615,880					
III (출연)	2015.11.19	406,140	3,249,120	정상지급(추정)		3,249,120	-
	2015.11.19	406,140					
	2015.11.24	812,280					
	2015.11.30	812,280					
	2015.12.08	812,280					
FFF (무대크루)	2015.11.19	309,440	2,474,520	<u>참여한적 없음</u>		2,474,520	2,474,520
	2015.11.19	309,440					
	2015.11.24	619,880					
	2015.11.30	619,880					
	2015.12.08	615,880					
JJJ (출연)	2015.11.19	406,140	3,249,120	2015.11.24	386,000	2,702,000	547,120
	2015.11.19	406,140		2015.11.30	22,000		
	2015.11.24	812,280		2015.11.30	750,000		
	2015.11.30	812,280		2015.12.08	772,000		
	2015.12.08	812,280		2015.12.14	772,000		
KKK (음향감독)	2015.11.19	309,940	2,475,520	정상지급(추정)		2,475,520	-
	2015.11.19	309,940					
	2015.11.24	619,880					

[표2] 보조사업 출연자에 지급한 사례비(인건비) 지급내역

고용인	급여일	급여	개인 급여총액	실제 급여일	실제급여	개인별 실급여 총액	편취액
	2015.11.30	619,880					
	2015.12.08	615,880					
LLL (조명오퍼)	2015.11.19	261,090	2,088,720		정상지급(추정)	2,088,720	-
	2015.11.19	261,090					
	2015.11.24	522,180					
	2015.11.30	522,180					
	2015.12.08	522,180					
MMM (출연)	2015.11.19	406,140	3,249,120	2015.11.24	350,000	2,450,000	799,120
	2015.11.19	406,140		2015.11.30	700,000		
	2015.11.24	812,280		2015.12.14	700,000		
	2015.11.30	812,280		2015.12.08	700,000		
	2015.12.08	812,280		-	-		
PPP (음향오퍼)	2015.11.19	261,090	2,088,720		정상지급(추정)	2,088,720	-
	2015.11.19	261,090					
	2015.11.24	522,180					
	2015.11.30	522,180					
	2015.12.08	522,180					
QQQ (음향)	2015.11.19	497,120	3,976,960	2015.11.19	497,120	3,976,960	-
	2015.11.19	497,120		2015.11.19	497,120		
	2015.11.24	994,240		2015.11.24	994,240		
	2015.11.30	994,240		2015.11.30	994,240		
	2015.12.08	994,240		2015.12.08	994,240		
급여 계			17,128,160			편취액 계	4,550,280

③ 숙박비 허위 정산보고

위 사람은 보조사업과 관련 행사를 하면서 인천 용진군에 있는 숙박업소 ‘===’에서 1인당 40,000원씩하여 총 400,000원(10명)을 집행한 것으로 보조금 정산보고를 하였으나, 제보내용에 대해 문예위 담당직원이 숙박업소에 문의한 결과 2016.12.2. 숙박비는 평일로 1실 당 70,000원이며 위 사람은 3실을 대여하여 총 210,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위 사람은 260,000원을 편취하고 과다 청구한 것으로 출연진 인건비와 더불어 보조사업 관련 경비지출에 있어서도 과다청구 하는 방식으로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착복하였을 것(제보자의 신고내용)으로 의심된다.

따라서 위 사람은 보조사업 출연자(보조금수령자)들에게 처음부터 사례비(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이 거짓 내용의 출연계약서를 작성하여 문예위에 제출하였고, 위 사람의 소속 근로자 및 객원단체에게 사례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되돌려 받았으며, 공연행사 등에 참여하지 않은 허위인물을 내세워 사례비를 편취하는 등 「보조금법」 제22조 및 제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죄혐의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 ① 보조금을 부정수급 혐의가 있는 보조사업자 ▼▼▼(대표 : ■■■■)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시고, [수사의뢰]
- ②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정되면 부정수급액 회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 등 행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